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55호 2018. 10. 15.(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공 고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위치지정 공고 ----- 4
-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5

기 타

- 시정알림판 ----- 11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8-14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88	원산로69번길 10	2018. 10. 15.	건물멸실
89	원호길5번길 11	2018. 10. 15.	건물멸실
90	북향로117번길 1	2018. 10. 15.	건물멸실
91	청호로67번길 24	2018. 10. 15.	건물멸실
92	영산로307번길 9	2018. 10. 15.	건물멸실
93	등근섬로9번길 8	2018. 10. 15.	건물멸실
94	터진목로34번길 4-1	2018. 10. 15.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1283호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목 포 시 장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8. 10. 15. ~ 2018.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	목포시 상동 산 38-1 외 1필지	최영균	2018-건축허가 -182	276.8	7	1,938	동의
2	목포시 산정동 99-2	강하라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199	14	0.5	7	동의
3	목포시 용해동 300-3 외 1필지	신희권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200	5	0.8	4	동의
4	목포시 산정동 68-2	김혹수	2018-건축행정과- 신축신고-19	6.32	2.2	13.91	동의
5	목포시 용당동 1055-55 외 1필지	정홍선	2018-건축행정과- 증축신고-49	4.6	0.6	3	동의
6	목포시 죽교동 573-24 외 1필지	주광필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209	11	1	11	동의
7	목포시 유동 1	김정금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216	12.5	1	12.5	동의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061-270-34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8-1284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기존 조례는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작품성이 미흡한 작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전시작품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전시작품을 구입코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사를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개정

- 예술진흥담당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을 관장하는 담당으로 변경
(안 제12조제2항)

나. 소장작품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리 등 조문 신설

- 제4장 소장작품추천위원회 구성 및 관리 등
-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추가 (안 제14조 신설)

다. 추가로 인한 조항 변경

- 제14조를 제15조로 변경(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9. 입법예고 : 2018. 10. 15.(월) ~ 11. 5.(월) / 21일간****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11.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수문로 31 목포시청(문화예술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술진흥 담당」”을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다음에 “제4장 소장작품추천위원회 구성 및 관리 등”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소장작품추천위원회)①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위원회와 전시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작품추천위원회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작품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작품추천회의에서는 소장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전시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소장작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변경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개정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 인을 둔다.	제12조 (간사) ①----- ----- -----.
② 간사는 <u>예술진흥담당</u> 이 된다	② 간사는 노적봉예술공원 <u>미술관</u> 업무를 <u>관장하는 담당</u> 이 된다
<u><신 설></u>	<u>제4장 소장작품추천위원회</u> <u>구성 및 관리 등</u>
<u><신 설></u>	제14조(소장작품추천위원회)①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 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위원회와 전시작품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작품추천위원회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미술관의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작품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작품추천회의에서는 소장 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전시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소장작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다.

현행	개정안
<u>제4장</u> 보칙 <u>제14조</u>(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5장</u> 보칙 <u>제15조</u>(-----) ----- ----- -----.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시 정 알 림 판

2018년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안내

2018년 유료독감(3가)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료독감은 빠른 소진이 예상되오니 접종 전에 백신 유무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 2018. 10. 15(월)~약품 소진 시까지
- 접종시간 : 09:00~17:00(오전접종 09:00~11:30, 오후접종 13:00~17:00)
- 접종장소 : 목포시보건소 및 하당보건지소
- 접종금액 : 7,500원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건강증진과 ☎ 061-270-8800

제9회 시민 일본어 무료강좌 실시

- 교육기간 : 2018. 10. 29.(월)~12. 12.(수) [총 20회]
- 교육시간 : 매주 3회(월·수·금), 14:00~15:30
- 교육대상 : 초급 일본어 교육을 희망하는 목포시민
※ 모집인원 30명 미만일 경우, 강의 미개설
- 교 육 비 : 무료(교재구입비는 본인 부담)
- 접수기간 : 2018. 10. 15.(월)~10. 26.(금)
- 접수장소 : 목포시청 일자리정책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전화(270-8457), 팩스(270-8791)



일자리정책과 ☎ 061-270-8457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 운영기간 : 2018. 9. 1.(토)~10. 31.(수) ※ 매주 월요일 휴무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시간은 17:30까지)
- 입 장 권 : 1매당 10,000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어린이, 청소년 등 무료
- 전시주제 : 오늘의 수묵 -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 전시장 및 기본방향 : 「현대 수묵의 재창조」



전시관명	전시주제	전 시 구 성
비엔날레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	수묵의 경계	◦ 수묵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현대 수묵 ◦ 미디어 및 설치미술 등 새로운 수묵 표현 작품
비엔날레 2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수묵의 숲	◦ 대형 수묵 설치 및 평면 작업 ◦ 실험적 전시장 구성으로 작품과 관객의 소통
비엔날레 3관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갤러리)	종가의 향기	◦ 전남의 대표적 자산인 종가집의 전통과 스토리를 정리하고 전경을 수묵으로 그려 전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 061-280-5879

시 정 알 림 판

옥외검침기 희망 수용가 신청 접수

- 옥외검침기 ? 집안(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침의 효율성을 기하고, 맞벌이(나홀로)세대, 장기출타 등 검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밖에서 단말기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 신청기간 : 2018년부터 연중
- 신청방법 : 유선(전화) 및 방문 신청(남교동 트윈스타 5층)

상하수도행정과 ☎ 061-270-8699, 3525

국민과 정부간 양방향 서비스, 「문서24」 안내

- 문서24 ? 일반 국민·기업·단체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18. 9월부터 모든 행정업무분야에서 전면 확대 실시)
 - 업무분야 :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소상공인, 건설건축 등 모든 분야
 - 서비스절차
 - ① 문서 제출(국민) : PC에서 「문서24」(open.gdoc.go.kr) 접속하여 문서 작성
 - ② 업무처리(공무원) :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국민이 제출한 문서 접수, 등록, 처리 및 처리 결과 통지 등 회신 문서 시행
 - ③ 처리결과 문서 확인(국민) : 「문서24」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도착 문서 확인
- ※ 카카오톡 등으로 처리과정 안내 서비스 제공

헬프데스크 ☎ 02)6006-5024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 신청기간 : ~2018. 12. 31까지
- 디지털방송 매체별 요금 감면 안내

선택	방송매체	안내내용
선택1	케이블TV	저소득층 전용상품 및 요금감면
선택2	IPTV (KT, SKB, LGU+)	저소득층 요금감면(30%)
선택3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저소득층 요금감면(30%) ※ 차상위 계층 제외

※ 자세한 요금감면 문의는 해당 유료방송사로 문의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 국번없이 124(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홈페이지 : www.digitaltv.or.kr(디지털마당)
- ※ 청각장애인 신청 안내 : 국번없이 107(손발이음센터)

